

# 소련의 대한반도-북한정책 관련 기구 및 인물 분석

: 해방~1948. 12.

기광서

## 1. 들어가는 말

해방 후 통일과 분단을 추동하는 격렬한 정세 속에서 일어난 총체적 상황 변동과 남북 양쪽에 두 국가의 수립은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sup>1)</sup>과 분리할 수 없다. 3년간에 걸친 소련군의 북한 주둔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방향뿐 아니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한국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련의 대한정책의 성격과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일은 그 중요한 한 축을 이룬다.

특정한 국가의 대외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집행 구조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분별력도 이같은 기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소련의 대한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 기구와 담당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성과는 소련의 정책을 규명하기 위해 부차적으로 하부기구 체계를 단편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sup>2)</sup> 즉 여기에는 군 점

---

1) 본 글에서 정책의 개념은 거시적이고도 전략적인 의미뿐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전술적 방책까지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령 기구의 서술에 한정되고 소련 본국의 정책 기구는 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 여러 자료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sup>3)</sup>

본 논문은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기구의 구성과 체계를 살펴본 다음, 각 단위 기구의 기능과 특징, 그리고 담당 인물들의 역할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단계를 해당 기구와 담당 인물들을 통해 살펴보고, 여기에는 어떠한 원칙과 구조가 작동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소련의 정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고 실행되었는지 파악하는 유효한 준거틀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소련의 최종 정책결정 라인(line)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정치적 문제를 담당한 반면 내각회의는 주로 사회·경제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지었다.<sup>4)</sup> 대북한 경제·문화 교류관계에서도 후자는 산하 재무성, 대외무역성, 전연방 대외문화교류협회(БОКС) 등을 통해 많은 역할을 하지만 본 글은 이 부문보다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군 담당 기관들의 정치·외교적인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글은 해방 후 소련의 대한정책의 성격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것을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적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기구와 인물들의 특징을 논할 때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정책 내용을 언급할 것이다.

이 글은 국방성 문서보관소(ЦАМО), 외무성 문서보관소(АВГР), 러시아 현대역사문서 보존 및 연구센터(РЦХИЗНИ)에서 공개된 해방 전후 한국관계 문서들을 분석한 기초 위에서 씌어졌다.<sup>5)</sup> 또한 러시아(구 소련)에서 간행된 각종 문헌

---

2) 대표적으로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1989), pp.85~107을 들 수 있다.

3) 예를 들면, 김광운의 연구에서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메커니즘 전반을 해명하려는 문제의식은 주목할 만하다. 김광운, “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 현실』 제22호(1996), 183~192쪽.

4) 내각회의는 때로 정치적 문제들도 취급했는데, 이를테면 소련군의 북한 철수가 1948년 9월 내각회의의 ‘정령’으로 확정된 것을 들 수 있다. ЦАМО, ф. 19, оп. 560, д. 8, л. 97.

들도 없어서는 안될 도움을 주었다.<sup>6)</sup>

## 2. 소련의 대한정책 관련 기구의 특징

해방 전 소련은 전후의 효율적인 대한정책을 마련하는 데 전문 인력과 담당 기구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것은 소련이 전시 하에 한국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1937년 소련령 극동 거주 한인들의 강제 이주와 함께 코민테른 기구, 외무성, 군대 및 각 정보기관

5) 본 논문에서 참고한 이들 문서보관서의 자료 폰드(фонд)만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외무성 문서보관소

φ. 06-외무 인민위원(장관) 물로토프 비서부(1939~1949), φ. 07-비린스키(외무 부인민위원) 비서부(1940~1949), φ. 013-로조프스키(외무 부인민위원) 비서부(1939~1946), φ. 018-말리끄(외무 부인민위원) 비서부(1946~1948), φ. 042-제1극동과(1939~), φ. 043-제2극동과(1939~1953), φ. 056-출판과(1917~1985), φ. 0102-한국 보고부, φ. 0129-미국 보고부, φ. 0294-서울 주재 소련 총영사관(1945~1946), φ. 0392-한국에 관한 소비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비서부, φ. 0480-북한 주재 소련민정국(1945~1948).

### ② 국방성 문서보관소

φ. 32-노동적군 총정치국, φ. 127-극동군 정치국, φ. 142-연해주 군관구 사령관 비서부, φ. 379-25군사령관 비서부, φ. УСТАСК-북한 주재 소련 민정.

### ③ 러시아 현대역사문서 보존 및 연구센터

φ. 17-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오피스 128-국제정보부, 대외정책부.

6) 그 대표적인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인민과의 우호를 위하여, 회상과 논문). М., 1965;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조선의 해방). М., 1976;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소비에트군 백과사전). Т. 1~8, М., 1976~1980; За мир на земле Кореи (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 땅에 평화를 위하여). М., 1985; Оружием слова(언론의 무기). Статьи 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еноведов 1941~1945 гг (1941~1945년 소련 동방 전문가들의 논문 및 회상). М., 1985;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외교사전). Т. 1~3, М., 1985~1986; Петухов В.И. У источников борьбы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기원에 서서). М., 1987; СССР и Корея(소련과 조선). М., 1988; Хлевнюк О. В. Политбюро. механиз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в 1930-е годы(정치국. 30년대 정치권력 메커니즘). М., 1996.

에서 일했던 한인들의 숙청과 관련이 있었다<sup>7)</sup>). 이로 인해 해방 이전 소련정부의 대한정책 기구는 따로 완비된 구조와 기능을 갖출 수 없었고, 종전 직후에도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고 현지 점령정책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난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해방 전 소련측이 확보한 대조선 정보 출처는 주 서울 총영사관과 주 일본 대사관 등 공식 계통 이외에 국가안전인민위원회 소속 요원들과 조·소 국경 지대에서 활동한 극동전선군 소속 정찰 부대가 확인되고 있다. 극동전선군 정치기관 내에서는 1940년 여름부터 대일전에 대비하여 일본·중국·몽골·조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정치요원들에게 각국의 정치·경제·역사·언어 등을 학습시켰다.<sup>8)</sup>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소련은 전시체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일부 권력기관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제2차 대전 기간 소련의 국가·군사·경제적 지도에 있어 일체의 권력을 쥐고 국가·군사기관, 당, 노동조합, 공청 조직들의 활동을 통합시켰던 국가방위위원회(ГКО)<sup>9)</sup>가 종전 후인 1945년 9월 4일 폐지되고, 위의 기능을 전연방(불세비키)공산당 중앙위원회(ЦК ВКП(б); 이하 당 중앙위원회)<sup>10)</sup>가 회복하였다. 정부기구들은 이보다 늦은 1946년 3월에 재조직되는데, 대한정책과 직접 관련된 기구만을 보면 국가 권력의 최고 집행 기관인 인민위원회의(СНК)는 내각회의(СМ)로, 외무인민위원

7) 1937년 가을 극동에서만 소비에트 일꾼, 군인, 의사, 교사, 작가, 구 적위군 빨치산 등으로 구성된 한인 열성분자 2,500명 이상이 일체의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Пак Б. Д.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1917~1930년대 말 소비에트 러시아의 한인들). Москва-Иркутск, 1995, с. 227~228.

8) Оружием слова(언론의 무기). Статьи 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стоковедов 1941~1945 гг. (1941~1945년 소련 동방학자들의 논문 및 회상). М., 1985, с. 137.

9) 이 기구는 독일의 침략에 대하여 총력을 동원할 목적으로 1941년 6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최고회의 간부회, 인민위원회의의 공동 결정으로 성립되었다. Истор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451~452. 국가방위위원회는 의장으로 I. V. 스탈린이, 위원들로는 V. M. 몰로토프(부의장), K. E. 보로쉴로프, G. M. 말렌코프가 있었으며, 나중에 N. A. 불가닌, N. A. 보즈네센스키, L. M. 까가노비치, A. I. 미코얀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전후에도 모두 소련 권력의 핵심부가 되었다.

10) 소련공산당이란 명칭이 채택된 것은 1952년 제19차 당대회 때부터다.

부(HKW)는 외무성(MW)으로, 방위인민위원회(HKO)는 무력성(MBC)으로 개편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기관들은 하부기구의 정책입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책임졌다. 이 과정은 무력성과 그 산하 정치기관 및 외무성 부서들로부터의 긴밀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기구의 수뇌부는 통상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를 점임하였기 때문에 정책기구간의 역할 설정은 정책 담당자의 위상에 따라 규정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지에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측은 25군사령부와 연해주 군관구로 짜여진 군부였기에 군의 역할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여전히 그 '기본축'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동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앙의 군 기구가 현지 '점령'정책의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종전과 더불어 전시체제의 국가 비상 기구들은 그 기능을 정지했지만 해방 후 북한에 진주한 군부가 주둔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점령지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던 주체는 단순한 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연방 공산당 소속의 수많은 당원들은 각 전선에 배치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그리고 구성공화국·변방·주 당 중앙위원회 서기 등 간부급들은 각급 군 단위의 군사회의 위원이나 정치기관의 장으로 파견되었다. 각급 군내의 정치기관을 구성한 인물들도 대부분 당원이면서 해당 소속 분야의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종전 후 소련의 점령지역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들이자 '군복 입은' 당원·정치가들이었다. 실제로 현지 군부의 보고체계는 군 제통(무력성)뿐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 관련 부서나 외무성과 같은 당·정부기관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해방 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군부와 민간기관을 구분해서 나누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소련 지도부에서 군 단위로 이어지는 대한반도(북한) 정책 라인을 대별하면, 모스크바 지도부(당 중앙위원회<정치국, 서기국, 대외정책부, 선전선동국>, 외무성<제2(1)국동부>, 무력성<총참모부, 총정치국>)-(극동군 총사령부)-연해주 군관구-25군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입안 과정은 통상 밑으로부터 올라오

는 경로와 모스크바 지도부의 자체 입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일반화시켜 보면 전자는 현지(북한)의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나타났고, 후자의 경우는 국제회의나 외교적인 문제를 다룰 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정치문제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수행하였지만 그 밑에 각 단위 기구들도 각자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정책 수준별로 결정 과정에 참여하였다.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기구들의 작용에서 드러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요정책의 최종 결정 과정이 소련 최고 지도부의 '일방 하달식'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한 점이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먼저 1946년 3월 북한측과 현지 소련군이 공동으로 작성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초안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법안이 최종 확정되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별도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농민동맹에 그것을 수정할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1)</sup> 같은 해 6월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 초안은 북한에서 작성한 것을 외무성과 전연방 직업동맹중앙회의(ВЛКСМ)가 수정 및 보충을 가한 다음 공표되었다.<sup>12)</sup> 1947년 11월~1948년 4월 북한 헌법 제정 과정에서도 소련은 북한측이 작성한 헌법 초안에 대해 일련의 수정과 보안을 권고하였다.<sup>13)</sup> 하지만 헌법 최종안에는 소련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한국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나 미소공동위원회, 유엔에서의 활동과 같은 대외교섭은 위와 같은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극동군 이하 단위에서 대한정책 관련 주요 기관들로는 군사회의와 정치국(정치부), 그리고 정치국 산하의 정치7국(7부, 7과)을 들 수 있다. 원론적 서술

11) АВПР, ф. 018, оп. 8, п. 6, д. 81, л. 3. 토지개혁에 대한 소련측의 구상과 입장은 김성보, "北韓의 土地改革과 農業協同化"(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100~107쪽에 잘 반영되어 있다.

12) АВПР, ф. 018, оп. 8, п. 6, д. 81, лл. 10~12.

13) 이에 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안에 대한 수정과 보충"(АВПР, ф. 07, оп. 21, п. 22, д. 316, лл. 9~11)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안에 대한 의견과 결론"(РЛХИДНИ, ф. 17, оп. 128, д. 1173, л. 47~51) 참조

## <표 1> 소련군 정치기관의 구성과 기능

기구명칭	위상	구성 및 소재	기 타
소련무력 총정치국	소련군 내의 최고 정치기관이 자 지도적 당 기관이며, 당 중 앙위원회 부서로서 활동. 당 중앙위원회를 대신하여 소련군 내의 당·정치사업 수행	선전선동국, 당사업조직국, 간부국, 공정사업부, 군사 사회학연구부, 기타 부서 등으로 구성. 조직 편제상 무력성 산하	각 군 정치기관에 지 도적 지침과 활동 방 향 제시
군사회의	군대 건설, 전투 조직, 군의 통제·준비·보장 등 원칙적 인 문제들의 논의나 결정을 위한 집단적 군 지도 기관. 군의 당·정치사업을 지도	소련군(소련군 전체가 아닌 그 구 성군. 예 : 소련극동군), 군관구(또 는 함대), 집단군, 군, 소함대 등 에 소재, 군사회의 의장은 해당 군 사령관	전시에 소련최고회의 간부회가 포고한 지 역에서 국가권력기관 의 모든 기능을 가짐
정치기관	소련군 내의 지도적 당 기관. 군대의 상태와 정치사업 문제 등에 관해 해당 군사회의 및 상급 군 정치기관에 보고	소련군(군사회의 설명과 동일), 군관구, 집단군, 방공구, 함대 단 위의 <b>정치국</b> 과 군, 소함대, 병단 및 독립 부대, 군관구 참모부 단 위의 <b>정치부</b> 로 나누어짐. 국방성 (무력성)과 소련군 총정치국, 해 군함대에 의해 설치됨	극동군 총사령부와 연해주 군관구에는 정치국 단위로, 25군사령부에는 정 치부 단위로 존재

로서 소련군 정치기구의 구성과 주요 기능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의 설명은 주로 군 내부의 사업에 한정된 것이지만 점령지역의 범위에 들어서면서 그 기능은 대주민 차원에서 확대되었다. 전후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와 산하 25군사령부 군사회의는 대북한 정책집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기관들이었다. 이 두 기관은 상위 기구인 외무성과 무력성,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의의 보고 계통을 유지한 채 일본군의 무장해제 및 소속 부대의 일상적 지휘뿐 아니라 북한지역의 민간 통치 사업에 대한 책임도 맡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모스크바 상부 기구의 지휘하에 정보의 수집과 보고, 북한의 민정 지도와 감독, 정책입안과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군사회의의 사업 집행에는 소속

군 정치기관과 북한의 민정기관(이후 민정국)에 대한 지도적 책임을 수반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1947년 1월 각급 군의 군사회의가 사령관 산하의 자문 기관으로 개편되면서 군사회의의 기능은 분산되었다.<sup>14)</sup>

대일 전쟁이 개시된 직후인 1945년 8월 10일 극동군 총사령부 정치국은 예하 정치기관에 일본 점령(식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과 '민주적' 인사 선발 등 광범위한 정치사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을 내렸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각 단위 군 정치국(또는 정치부) 소속 제7국(또는 7부, 7과)의 역할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 기관들은 적군(敵軍)과 주민, 그리고 소련군이 점령한 영토에서 선전활동을 책임지던 부서<sup>16)</sup>로서 특별선전국(부, 과)으로도 불리며, 각종 정보 수집과 대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소련군의 북한 내 활동에서도 정치국(정치부) 제7국(7부, 7과)의 실무적 활동은 정책 형성 과정에 빼놓을 수 없는 의미를 지녔다.<sup>17)</sup>

해방 후 한반도와 관계된 군 정치기구들의 주요 기능을 일반화시켜 보면 첫째,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정세변동 등에 대한 제반의 정보를 축적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상급 기관에 정책안을 제기하며, 셋째, 상부에서 확정된 정책 및 조치를 집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3. 당 중앙위원회 및 내각 기관

#### 1) 당 중앙위원회 기관

당 중앙위원회 내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부서들로는 정치국, 서기국,

14)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с.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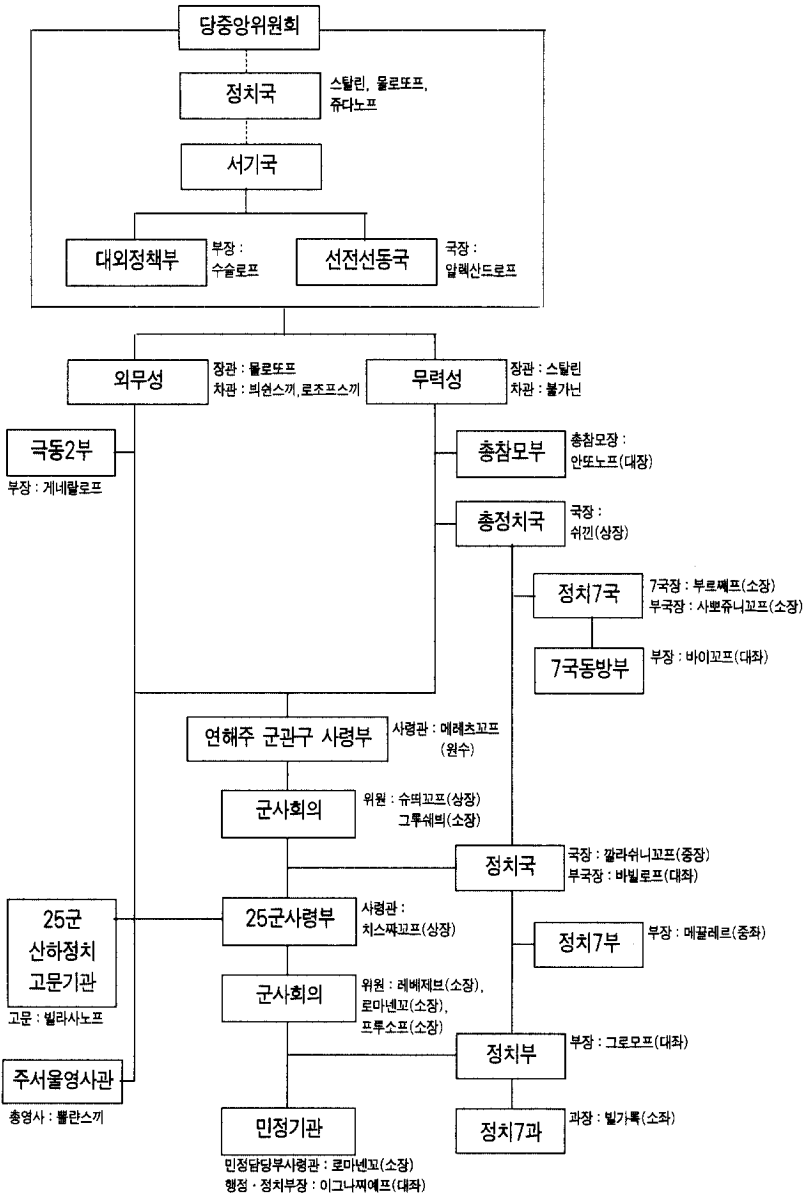
15) Оружием слова, с. 163~164.

16) Ланьков А. 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вчера и сегодня(북한 : 어제와 오늘). М., 1995, с. 160~161.

17) 소련군 총정치국 정치7국과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 정치7부는 한반도(북한)의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림 1>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 지휘도(1946)



그리고 서기국 산하 대외정책부와 선전선동국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총회 기간 동안 정치·조직문제를 결정하는 기관이며, 명실상부한 소련의 최고 권력기구였다. 먼저 정치국 내에서 소련의 대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국의 모든 정책결정은 통상 정기·비밀·특별 회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기회의의 결과를 담은 의사록에는 회의 참가자, 논의된 문제, '정령'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비밀·특별회의에서는 의사록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고, 여기서 채택된 '정령'에는 회의 참가자들을 표기하지 않고 '정치국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 정기회의 의사록의 부록 형태로 기록되었다. 또한 정치국의 '정령'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정치국원들의 조회를 통해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진 '정령'에는 '정치국원의 조회로 채택된 결정'이라는 표제로 정치국 정기회의 의사록의 부록에 기록하였다.<sup>18)</sup> 정치국의 이러한 운영 방식은 대독전쟁 이전 193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1940년대 중반에도 거의 동일한 방식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인다. 1937년 이후로 '정치국 결정'의 표제 하에 기록된 정치국 '정령'은 더욱 늘어났다. 이로 보아 정치국 '정령'을 내리는 데는 담당 정치국원의 개인적 권한이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한반도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정부와 군내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이 상당 부분 그대로 '정령'에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령'의 초안 작성은 대체로 각 부처의 실무 기구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관해서는 정치국원과 당서기 등 고위 간부들 간의 의견 교환이나 협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해방 후 한국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정치국원들의 면면과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주요정책의 최종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절

18) Хлевнюк О. В. Политбюро. механиз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в 1930-е годы, с. 287.

19) 이 같은 상황은 1937년 스탈린의 '대탄압'과 더불어 개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숙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본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참고로 1936년 정치국 회의는 모두 9차례밖에 열리지 않은데 비해 정치국 의사록에 나타난 문제 항목은 3,367건에 달했다. 1939년과 1940년에도 의사록에 각각 2,973건과 3,008건의 문제가 심의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Там же, с. 288~289.

차일 것이다.

이 시기에 활동한 정치국원들로는 스탈린, V. M. 몰로토프, A. A. 주다노프, A. I. 미코얀, G. M. 말렌코프(1946년 3월 선출), A. A. 안드레예프, K. E. 보로실로프, L. M. 까가노비치, M. I. 갈리닌(1946년 6월 사망), N. S. 흐루쇼프(흐루시초프), L. P. 베리아(1946년 3월 선출), N. A. 보즈네센스키(1947년 2월 선출), A. N. 꼬식긴(1948년 9월 선출)과 N. A. 불가닌(후보위원, 1948년 2월 정치국원으로 선출)을 들 수 있다.<sup>20)</sup> 이들 중 대한정책에 가장 비중이 큰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을 언급할 때 스탈린의 존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당시 지닌 지위와 위상이 말해 주듯<sup>21)</sup> 소련의 모든 대내외 정책은 그의 절대적 권한 내에서 결정·집행되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스탈린의 관심과 개입 범위는 의외로 광범위했다. 소련의 대북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1945년 9월 20일자 ‘훈령’<sup>22)</sup>이 그의 명의로 발송되면서부터 그는 때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북한 민정 지도 총책임자인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슈뎨코프와 암호 전문을 통해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sup>23)</sup> 문서상으로 아직 많은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 정치국과 내각회의 ‘정령’은 사안에 따라서는 그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채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스탈린은 한반도 정책결정의 총괄적인 지휘자였던 셈이다.

---

20) Состав руководящихся орган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политбюро(президиума), оргбюро, секретариата ЦК (1919~1990 гг.) (당 중앙위원회 지도기관-정치국(간부회), 조직국, 서기국 구성. 1919~1990). Известия ЦК КПСС, 1990, № 7, с. 75~76.

21) 이 시기 스탈린이 보유한 주요 직책들로는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1922~1953), 당 정치국원(1919~1952), 인민위원회의(1946년부터 내각회의) 의장(1941. 5~1953), 국가방위위원회 의장(1941. 6. 30~1945. 9. 4), 국방인민위원/무력성장관(1941. 7. 19~1947), 소련군 최고 총사령관(1941. 8. 8~1953) 등을 들 수 있다.

22) 이 ‘훈령’은 북한에 소비에트 질서를 도입하지 말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권력수립을 방조할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훈령’의 전문은 ЦАМО, ф. 148, оп. 3763, д. 111, лл. 92~93에 나와 있다.

23) 해방 후 이들이 주고받은 암호 전문 가운데 1945년 10월 13일, 16일, 1946년 1월 16일, 1948년 11월 20일자가 확인된다.

스탈린 다음 가는 대한반도 정책의 최고 정책결정자는 몰로토프였다. 그는 정치국원과 당서기를 겸임하면서 동시에 각종 정보가 종합되어 올라오는 외무성의 수장으로 사실상 당시 소련의 제2인자로 자리하였다.<sup>24)</sup> 외무성의 관계부 문 차관들과 군의 정책 건의는 대체로 몰로토프의 판단을 거쳐 확정되거나 당 정치국이나 내각회의의 결정안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스탈린 및 다른 지도부와 협의를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정책결정 가운데 그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25)</sup> 동시에 그는 해방 후 한반도의 장래를 다룬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문제 결정을 도출해 냈고, 이후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과 유엔의 소련 대표 활동을 사실상 총지휘 하였다. 이처럼 미소관계와 국제무대에서 몰로토프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건 대 그가 한반도 운명의 주요 결정자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쥬다노프는 당 중앙위원회 이념문제 담당 서기를 겸임하면서 주로 당의 선전·선동과 관계된 업무를 관장하였다. 다른 정치국원들과는 달리 그는 각료 직을 맡지 않고 당 사업에 주력했는데,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주로 선전의 조직화와 간부 양성, 문화 관련 사업, 언론·출판 사업 등에 관계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 대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 및 각종 문화 사업은 그의 전반적 지도하에 이루어졌다. 그는 또한 1946년 남로당 결성 과정을 비롯해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영역에도 깊숙히 관여하였다.<sup>26)</sup>

대독 전쟁 시기 소련군의 물품 공급 조직에 대한 통제를 맡았던 미꼬얀은 대외통상성(MBT) 장관과 내각회의 부의장을 겸임했던 관계로 대북한 무역 관련 사항의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경제학자인 보즈네센스키는 파시즘과 식민지 해방 지역에서 인민 경제를 복구·지도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이 때문

24) 몰로토프가 겸임하던 주요 직책으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1926~1952), 인민위원회의 제1부의장(1941~1946), 내각회의 부의장(1946~1953), 제1부의장(1953~1957), 국가방위위원회 부의장(1941~1945), 외무장관(1939~1949, 1953~1956) 등이 있다.

25) 문서상으로 파악하건대, 가령 그는 북한의 토지개혁(1946. 3.)과 화폐개혁(1947. 12.)에서 당시 소련측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듯하다. АВВР, ф. 018, оп. 8, п. 6, д. 81, лл. 1~3 ; ф. 06, оп. 9, п. 59, д. 885, лл. 4~8.

26) РЛХИЗНАИ, ф. 17, оп. 128, д. 205, л. 132~133.

<표 2> 대한민국 정책 관련 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 구성

성명	주요 직책	주요 역할 내역
I. V. 스탈린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의장, 무력성 장관	대한반도 정책의 최고 결정자
V. M. 몰로토프	당 정치국원, 내각회의 부의장, 외무성 장관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와 미소교섭을 주도하고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
A. A. 쥬다노프	당 정치국원, 당서기	대북한 이데올로기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도
N. A. 불가닌	당 정치국 후보위원, 무력성 차관	군무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대북한 정책결정에 영향력 행사
M. A. 수슬로프	당 중앙위 대외정책부장, 당서기(1947. 5.)	정부기관과 상급 군 정치기관의 보고와 건의를 접수하고 정책판단 수행

에 북한 경제문제 결정에 큰 영향을 행사하였다.

서기국은 당의 모든 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정치국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었다. 또한 정치국 회의에 부쳐질 의제들을 자체의 ‘결정’을 통해 사전에 심의·검토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스탈린을 총서기로 한 서기국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여한 서기들로는 A. A. 안드레예프(1946년 3월 해임), A. A. 쥬다노프, G. M. 말렌코프(1946년 5월 해임, 1948년 7월 복직), M. A. 수슬로프(1947년 5월 선출)가 있었다.<sup>27)</sup>

서기국 산하 대외정책부와 선전선동국은 당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장 직접적으로 취급한 기관이었다. 먼저 대외정책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외국에서 소련의 선전을 조직화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한반도와 관련한 이 기관의 임무는 각 군과 외무성의 담당 부서로부터 각종 정보와 보고를 취합하여 정책판단을 수행하는 데 있었다. 대외정책부장

27) 나머지 서기들로는 A. S. 웨르바코프, A. A. 푸즈네초프(1946년 3월 선출), G. M. 뽀보프(1946년 3월 선출), N. S. 삐뜰리체프(1946년 5월 선출, 1947년 5월 해임)를 들 수 있다. Состав руководящихся орган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политбюро(президиума), оргбюро, секретариата ЦК (1919~1990 гг.). Известия ЦК КПС, 1990, № 7, с. 76.

M. A. 수슬로프<sup>28)</sup>는 주로 정부기관과 상급 군 정치기관의 보고와 건의를 접수하고,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1946년 6월 허가이, 이동화, 기석복 등 소련계 고려인 간부급 13명과 이와 별도로 평양학원 등의 교원으로 채용된 50명을 북조선공산당의 관리로 옮겨 달라는 김일성의 요청을 처리한 바 있다.<sup>29)</sup> 이후 그는 당서기로 전임하면서 대한정책을 당 차원에서 조직·지도하는데 핵심적 위치에 섰다.

선전선동국은 이데올로기 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세우고, 당 중앙위원회와 소련정부의 과학·문화·교육문제에 대한 결정과 지시의 집행을 준비·조직하는데 참여하였다. 예를 들면, 소련문헌을 번역·출간하여 북한에 보급하는 사업도 선전선동국의 책임 하에 집행되었다. 이 부서는 뒤에 문화성 장관을 지내게 되는 G. F. 알렉산드로프가 이끌었다. 그가 관여한 정책 업무를 들여 보면, 1946년 9월~11월 북한측으로부터 사회 조직을 위한 인쇄 및 영화 설비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 그와 수슬로프는 1947년 4월 관련 정부기 관들의 동의를 얻어 주다노프에게 이를 내각회의 '정령'으로 확정지어 줄 것을 요망하고 그 안을 마련하였다.<sup>30)</sup> 알렉산드로프는 또한 1946년 3월경 타스통신 평양 지국 개설 및 미소공동위원회 특파원 파견 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밖에 문서상에 나타난 당 중앙위 중간 간부들로는 A. S. 빠뉴쉬긴, S. M. 꼬발료프(당 중앙위 ○○부 부장), L. S. 바리노프(당 중앙위 ○○부 부부장), S. 샤필로프 등을 들 수 있다.<sup>31)</sup> 당 중앙위 산하에는 중국·일본·한국문제를 취급한 전군준비태평양과(과장 : E. 꼬발료프)가 있었는데, 이 부서는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당 중앙위 서기국과 산하 부서의 지침을 위한 개요나 보고, 그

28) 1946년 3월 당 중앙위원회 대외정책부장을 맡기 이전에는 리투아니아당을 지도했다. 194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서기로 선출되고 이후 『프라우다』 편집장(1949~1950)을 역임하기도 했다.

29)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д. 55, л. 5 ; Там же, д. 205, л. 72. 김일성의 이 요청은 소련 군 총정치국장 쉬긴의 건의를 통해 전달되었다. 이 문제가 수슬로프의 직권으로 결정되었는지 아니면 당 정치국 '정령'을 통해 해결되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30) РЦХИДНИ, ф. 17, оп. 128, д. 1119, л. 93.

31) 이점개도 한반도 정책에 개입한 당 중앙위 중간 간부들의 정확한 직책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 간부들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리고 당 중앙위 정보국의 ‘공보’에 실린 논문을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 2) 외무성과 무력성<sup>32)</sup>

소련의 정부기관들은 해당 업무에 따라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을 맺었다. 이 중 정치 부문을 중심으로 한 통치 사업은 외무성과 무력성의 업무에 소속해 있었다. 특히 외무성은 제반의 정책 사안에 대한 현지의 보고와 건의가 집중되는 기구였다.

소련 외무성이 식민지 조선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소·일 국교 수립이 이루어진 1925년부터인데, 이때 서울에 설치된 소련 총영사관은 조선의 상황과 각종 정보를 분석·종합하여 외무인민위원회 제2극동부와 동경 주일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다.<sup>33)</sup> 해방 후 소련의 대한정책을 다룬 주무 기구가운데 외무성은 가장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문제들을 취급한 기관이었다.

외무성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한반도 관련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것이었다. 전후 한국문제 처리의 주요 계기들로 작용한 일련의 미·소간 교섭과 국제회의, 즉 모스크바 삼상회의, 미소공동위원회, 유엔회의 등에서 소련의 입장과 방침은 주로 외무성의 정책입안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각종 회의에서 소련 대표단을 지휘한 외무성 장·차관급의 역할이 막중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비서부로부터 보좌를 받았고, 여기서 모든 보고서가 검토되고 일부 정책입안 및 결정안이 작성되었다. 이 밖에도 외무성은 대외

---

32) 1946년 2월 방위인민위원회부와 해군 합대 인민위원회부를 기반으로 연방공화국 무력통합 인민위원회부가 창설되고, 46년 3월에는 국가통치기관체계에 성(省)이 도입되면서 무력성으로 개편되었다. 1950년 2월 25일 무력성은 다시 육군성과 해군성으로 분리되었다가 53년 3월에 다시 국방성으로 통합되었다.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с. 295.

33) 1945년 초반 주 서울 총영사 A. S. 뿔란스키가 외무인민위원회 제2극동부장 슈코프에게 보낸 서신에 나타난 것만 해도 총영사관은 1943~1944년 “1943년 조선의 정치 개요”, “조선의 전기에너지 개요”, “조선행정기관의 구조, 기능, 지도구성과 행정 분립”, “일본의 군사·경제적 잠재력에 있어서 조선의 역할”, “1944년 조선의 정치 개요” 등의 보고문을 본국에 송달하였다. АВВР, ф. 0102, оп. 1, п. 1, д. 2, лл. 2~4.

무역성이나 재정성 같은 여타 정부기구와 제반 문제에 대한 공동의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연해주 기관이나 주 북한 소련 민정국(УСГАК)<sup>34)</sup>과 연락을 맺어 주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외무장관은 앞서 언급한 몰로토프였고, 그를 밀받침한 몇몇 차관급 인사들을 살펴보자. 먼저 외무성 고위 인사 가운데 한국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은 외무인민위원회 부인민위원(외무성 차관) S. A. 로즈프스끼를 들 수 있다. 그의 역할과 관련한 한 가지 실례를 보면, 1945년 10월 초반 경 다음에 언급될 메레츠코프, 슈피코프, 발라사노프는 북한의 민사 행정 조직과 산업문제에 대한 일련의 건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외무성 제2극동부장 게네랄로프와 소련군 총정치국 7국 부국장 사뵈쥬니코프 소장 등은 25군에 보낼 '훈령'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북조선 임시 민간 자치위원회'의 수립과 이를 통제 지도할 민정 담당 부사령관 직제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sup>35)</sup> '훈령'안은 검토용으로 소련군 총참모장 안토프와 총정치국장 쉬긴에게 발송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몰로토프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지휘한 것은 로즈프스끼 자신이었다. 이렇듯 로즈프스끼는 하부기구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보고와 정책 건의 및 그 처리 방안을 관장하였다. 그는 또 소련 정보국 부국장직을 겸임하면서 소련 언론에 한국문제를 다루는 책임을 졌다. 1946년 전 반 『프라우다』, 『이즈베스티야』 등에 실린 다수의 한국 관련 글들은 그의 지도하에 게재되었다.<sup>36)</sup> 그가 1946년 중반경 외무차관직을 사임하고부터는 그

34) 여태까지 이 기관은 민정부 혹은 민정청으로 알려져 왔다. 해방공간에는 극히 일부 민정부로 번역되기도 했다(예: '정로' 1946. 1. 24). 민정청이란 용어는 해방 후 남한에 설치된 미군정청과의 대비로서 최근 일부에서 쓰여지고 있다(이틀테면,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대북한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1995. 참조). 그러나 주북한 소련 민정기구와 미군정청과는 기구의 기능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힘들다. 문제는 '部', '廳', '局' 모두로 번역될 수 있는 'Управление'의 바른 해석인데, 통상 군 기관을 가리킬 때 이 용어는 '局'으로 포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Управление советской гражд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는 이 같은 관용에 의거하여 주북한 소련 민정국으로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35) ЦАМО, ф. 19, оп. 266, д. 27, лл. 247~248.

36) 이들 신문에 게재된 한국문제에 관한 논문의 주요 필자는 제2(1)극동부 3등 서기 V. I. 베투호프인데, 그가 쓴 기사들은 스톨렌스끄란 필명으로 게재되었다. 그는 У источник



를 대신하여 다른 외무차관인 A. Ya. 비쉘스키<sup>37)</sup>와 Ya. A. 말리끄<sup>38)</sup>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비쉘스키는 일찍이 알타·포츠담 회담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소련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한국문제에 인연을 맺었다. 그는 제1차관의 직위에서 몰로토프에게 전달된 정책 건의를 위임받아 처리하기도 했다.

말리끄는 해방 이전 주 일본 대사를 역임하면서 일찍이 한반도와 관계를 맺었다. 이후 그는 전후 일본 처리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이익 관철을 위해 앞장섰고 한반도 문제에도 개입하였다. 로조프스키가 사임한 후부터 현지나 다른 부처에서 외무성으로 전달되는 보고는 상당 부분 그에게 집중되었고, 외무성의 대한 정책입안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구실을 하였다. 말리끄는 특히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된 1947년 이후에는 주 유엔 소련 대표로서 국제 무대에서 소련의 대한정책 실행을 주도하였다. 이 밖에 한반도 정책에 관여한 다른 외무차관들로는 F. T. 구세프와 V. A. 조린을 들 수 있다.<sup>39)</sup>

이들 외무차관은 주요 결정 사안의 경우 하부 단위에서 정책 건의안을 받아 자체 판단을 거친 후 다시 몰로토프 장관이나 당 중앙위원회 주무 기관에 판단 및 결정을 요청하는 보고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후 시점에서 소련 내에 한국문제 전문가는 거의 없었던 관계로 한반도 관련 사항은 일본문제 전문가들이 담당하였다. 해방 직후 외무성의 한국문제 담당 부서는 일본 및 여타 아시아 국가문제를 전담하던 제2극동부였다. 제2극동 부장은 D. A. 쥬코프였고, 부부장은 E. G. 자브로진이었다. 1945년 10월부터는 N. I. 게네랄로프가 새로운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1946년 말 한국문제 담당

---

*ов борьбы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기원에 서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37) 외무인민위원회 제1부인민위원회(1940~1946), 외무성 차관(1946~1949), 외무장관(1949~1953), 외무성 제1차관 겸 유엔 소련 상임대표(1953~1954).

38) 주일본소련대사(1942~1945), 극동회의 정치고문(1945~1946), 외무성 차관(1946~1953), 유엔 소련상임대표 및 유엔안보리 소련대표(1948~1952).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 2, с. 176.

39) 구세프는 주로 북한에 소련 전문가 파견이나 유학생 수용 등 인력 송출·교육문제를 담당하였다. АВРР, ф. 06, оп. 9, п. 59, д. 888, лл. 2~3; д. 889, л. 3.

부서는 한국이 일본보다는 중국과 더욱 관계가 확대될 것이라는 정책판단 아래 중국과 몽고 담당 부서인 제1극동부로 이전되었다.<sup>40)</sup> 이 부서의 책임자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참가하는 G. I. 툰끼<sup>41)</sup>이었다. 그는 북한의 헌법안 작성 등 주요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고 소련정부의 방침을 북한 주둔 25군사령부에 지시하는 통로 역할을 맡기도 했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제1(2)극동부는 주 북한 소련 민정국과 25군 산하 정치 고문 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보고와 자문 요청, 정책 건의 등을 수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다. 또한 자체의 정세판단을 근거로 각종 보고와 정책 건의 및 그 초안을 작성하여 상부(주로 외무성 장·차관)에 제출하였다.

서울에는 외무성의 지휘를 받는 총영사관이 1946년 여름 미국측과의 갈등으로 폐쇄될 때까지 남한의 제반 정세와 미군의 정책에 대한 소련측 정보 수집의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다. 총영사 A. S. 뿔란스키는 전반적인 총영사관 업무를 지휘했으며, 부영사 A. I. 샤브선은 각종 정세 및 상황 보고, 조선 지도 자들과의 연계 및 교류를 맡았다. 샤브선은 1939년부터 주 서울 소련 영사관에 근무했으며, 슈띠코프가 “조선에 대해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할만큼 최고의 ‘조선통’이었다.<sup>42)</sup>

북한 주둔 25군사령부 산하에는 일본문제 전문가 G. M. 발라사노프가 이끄는 조선문제 정치고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이후 1946년 4월 4일에는 내각회의의 조치에 따라 13명의 정치고문기구 구성원이 확정되었다.<sup>43)</sup> 이 기관은 조직

40) Петухов В. И., Там же с. 83.

41) 소련 외교관 겸 국제법 전문가. 주 이란 영사(1941~1942), 주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1942~1944), 외무성 제1극동부 부장(1945~1948), 주 북한 대사관 참사관, 공사(1948~1950) 역임.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Т. 3, с. 486~487.

42) Шабина Ф. И. В колониальной Корее 1940~1945(식민지 조선에서 1940~1945). Записки и размышления очевидца(목격자의 기록과 고찰). М., 1992, с. 278. 이 책의 저자이자 러시아 한국학계의 권위자인 파냐 샤브쉬니는 그의 아내이다. 뿔루호프도 샤브신을 가리켜 조선의 역사·민속·관습·문화에 통달하였으며, 그가 “조선의 진보적인 정치·사회 활동가들과 광범한 연계를 가진 것은 실천적인 사업을 위해 특별한 가치가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Петухов В. И. Там же, с. 55.

43) 발라사노프의 임명은 1945년 9월 21일 인민위원회의의 결정에 의거했다. ГАРФ, ф.

<표 3> 대한민국 정책 관련 외무성의 주요 부서 및 간부 구성

부서	책임자	역할
장관	V. M. 몰로토프	〈표2〉 참조
차관	A. Ya. 빅신스키	제1차관, 사안별 정책 조정
	S. A. 로조프스키	외무성의 정책입안을 주도.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
제2극동부	Ya. A. 말리고	로조프스키의 정책 조정 역할을 이어받음. 1948년부터 유엔에서 대한 정책 실행을 주도
	N. I. 케네랄로프	1946말 이전까지 주 북한 소련 민정국과 25군 산하 고문 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보고와 정책 건의 등을 수용. 이를 기반으로 정책입안 수행
제1극동부	G. I. 툰킨	제2극동부의 역할 계승(1946년 말 이후)
25군 정치고문 기관	G. M. 발라사노프	남북한 정세 파악 및 정무 구상을 외무성 상부 기관과 연해 주 군관구에 보고. 사안에 따른 정책입안 수행
주 서울총영사관	A. S. 뵈란스키	남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주요 출처

편제상 25군사령부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외무성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았다. 발라사노프는 전 한반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건의를 하였지만,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상황 분석과 문화 관련 부문에 많은 역량을 할애했다. 주 서울 소련 총영사관이 폐쇄되면서 1946년 가을부터 부영사 사브룬이 부고문으로 이 기관에 합류하였다. 특별히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고문기관은 민정국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였고, 조직의 주요 업무는 남북한의 정치 상황과 남한 주둔 미군의 조치 등을 고찰·분석하며, 자체의 견해와 구상을 외무성과 연해주 군관구에 보고하는 데 있었다.

북한 내 소련군의 주둔으로 그 지휘부인 무력성의 정책적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무력성은 현지 군에 대한 군령과 군무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그러나 무력성의 기능은 반드시 현지 군에 대한 명령과 통제에만 국한된 것은

5446, оп. 48а, д. 172, лл. 15~16.

아니었다. 스탈린 자신이 무력성 장관을 겸임하였고, 차관인 불가닌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직에 있으면서 대북한 정책결정에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소련군 총정치국이나 연해주 군관구의 정치기관 등이 작성한 정치보고 가운데 상당수는 불가닌에게도 전달되었다.

군 단위 정책집행 기구의 구성과 개편은 무력성과 산하 총참모부의 업무에 해당하였다. 예를 들면 1945년 10월 주 북한 민정기관의 설치에 따른 직제 부여는 방위인민위원(무력성 장관)인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1947년 민정국으로의 확대·개편은 무력성 차관 불가닌의 명령에 의거하여 실시되었다.<sup>44)</sup> 불가닌은 1946년 8월 북한에서 3개의 보안 간부 훈련소 설치에 즈음하여 장성급 3명, 장교 343명으로 구성된 소련군 고문단을 둘 것을 허가하기도 했다.<sup>45)</sup> 제2차 대전 기간 중에는 연합국간의 회담과정에서 군사관련 제의나 보고, 자료 등을 준비했던 총참모부도 정책결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다. 가령, 북한의 기본질서의 구도가 담긴 1945년 9월 20일자 ‘훈령’은 스탈린과 총참모장 A. I. 안토프 대장의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초에 열린 미·소 양군 대표자 회담에 대비한 소련 대표단 ‘훈령’도 안토프의 명의로 발송되었다.<sup>46)</sup>

군 최고 정치기관으로서 소련 무력 총정치국(ГлавПУ ВС СССР)<sup>47)</sup>은 극동군 총사령부·연해주 군관구 정치기관의 보고를 토대로 독자적인 정책 판단과 입안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기관은 조직상으로는 무력성에 편제되어 있었으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 중앙위원회 부서로 활동하였다. 총정치국의 보고와 정책 건의는 통상 외무성과 무력성의 장·차관, 그리고 당 중앙

44) 『북조선 소비에트 민정국 사업결과 보고(1945~1948)』(노어) 제1권 정치 부문, 평양, 1948, АВПР, ф. 0480, оп. 4, п. 14, д. 46, л. 7~9.

45)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л. 121~132. 군사고문단 수는 1948년 3월 16일자 총참모부의 훈령에 따라 195명으로 축소되었다.

46) АВПР, ф. 06, оп. 8, п. 39, д. 634, лл. 2~6 참조. 물론 이 ‘훈령’은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확인을 거쳤다. 안토프의 후임으로 1946년 3월 극동군 총사령관 A. M. 바실리엠프가 총참모장이 되었다.

47) 이 기관은 1946년 2월 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동적군 총정치국(ГлавПУ РККА) 과 해군함대 총정치국(ГлавПУ ВМФ)이 통합하여 탄생되었다.

<표 4> 대한반도 정책 관련 무력성과 군 지도부 구성

직책	성명	주요역할
무력성 장관	I. V. 스탈린	<표2> 참조
무력성 차관	N. A. 불가닌	<표2> 참조
총참모부 참모장	A. I. 안또노프	군무와 관계된 문제의 결정 참여
총정치국장	I. V. 쉬긴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 등 산하 정치기관 지도. 주요정책입안
총정치국 7국장	M. I. 부르쎬프	연해주 군관구 정치기관 등의 정보보고 등을 기초로 당 중앙위 등 상부 기구에 정책입안
총정치국 7국 부국장	V. 사뵈쥬니코프	당 중앙위를 위시한 상부 기관에 대한 주요 정보보고 및 정책 입안. 총정치국 내의 '한반도 최고 전문가'

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당 중앙위원회 부서들과는 상시적인 보고와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었다. 총정치국 내의 지휘 계통은 총정치국장을 정점으로 7국→7국 동방부로 이어졌다. 1946년 초 소련군 총정치국장으로 I. V. 쉬긴 상장이 오르는데, 그는 대일 전쟁 직전 중앙아시아 치타에 본부를 둔 극동군 총사령부에서 군사회의 위원 겸 정치국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한국문제에 관여하게 된다. 대일전 이후 예하 정치기관들은 대민 활동의 지침을 담은 그의 '훈령'에 의거해 활동하였다. 그는 군 정치기관의 수장으로서 당 중앙위나 외무성·무력성 최고위 간부들과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이끌 만한 위치에 있었다. 예를 들면 조선공산당 총서기 박헌영이 1946년 3월~12월 조선공산당에 대한 재정 지원을 슈띠코프에게 요청했을 때, 쉬긴은 이를 지지하여 불가닌에게 몰로토프(내각회의 부의장 자격)의 최종 결정을 위한 공헌을 보내기도 했다.<sup>48)</sup>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자신이 직접 챙겼는데, 이를테면 북한 내 소련군의 대민간 신문인 『조선신문』은 그의 '명령'에 의거하여 발행되었다.<sup>49)</sup>

소련군 총정치국 7국장은 M. I. 부르쎬프 소장, 부국장은 B. 사뵈쥬니코프

48) ЦАМО, ф. 32, оп. 11473, л. 45, лл. 124~125. 이때 요청된 액수는 1,550만원 규모였다.

49) ЦАМО, ф. 32, оп. 795436С, л. 13, л. 376а.

소장이었다. 이들은 자신들 명의로 된 많은 보고문을 당 중앙위원회 부서 등에 제출하였으며, 정책입안 과정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의 ‘훈령’ 초안을 외무성 제2극동부장 게네랄로프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sup>50)</sup> 부르제프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 위원 T. F. 슈퍼코프의 초안을 참조하여 1946년 3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라 수립될 ‘한국 임시 정부’ 내각후보 명단 안을 구성하기도 했다.<sup>51)</sup> 사뵈쥬니코프는 해방 후 북한에 직접 파견되어 정보 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총정치국 내에서 한반도 관련 업무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7국 동방부의 책임자로는 바이코프 대좌가 활동하였다.

## 4. 군 지도 기관

### 1) 연해주 군관구

소련의 대일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고 난 뒤인 1945년 9월 3일 전시 편제의 제1극동전선군은 연해주 군관구로 개칭되었다.<sup>52)</sup> 앞서 언급한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의 ‘훈령’ 제7항은 “북조선 민정 사업의 지도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가 실행할 것”<sup>53)</sup>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연해주 군관구는 이보다 앞서 25군을 지휘하였던 관계로 이 기관의 북한 민정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 25군이 북한에 주둔한 때부터 실시되었다. 보로실로프(현 우수리스크)에 위치한 연해주 군관구는 북한 주둔 25군에 대한 군사상 지휘뿐 아니라 모스크바 지도

50) ЦАМО-А, ф. 19, оп. 267, д. 8, лл. 87~97.

51) РИХИЗНИ, ф. 17, оп. 128, д. 61, лл. 1~14.

52) 대일전을 앞둔 1945년 8월 2일 연해주 집단군은 제1극동전선군으로 개칭된 바 있다.

53) ЦАМО, ф. 148, оп. 3763, д. 111, 92~93. 1944년 5월 소련은 대외 군사 작전의 확대와 관련하여 각 전선군 군사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소련군의 ‘해방적 사명’과 관계된 군사회의와 정치기관의 과업을 논의케 하였다.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М., с. 274.

부의 대북한 정책을 25군 군사회의와 민정기관에 하달하고 이들의 보고 및 정책 건의를 취합하여 자체안을 작성한 다음 상부에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연해주 군관구 사령부는 군 명령계통에 따라 극동군 총사령부(사령관 : A. M. 바실리엥스키 원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반도 정책문제에 이르러서 극동군 총사령부가 연해주 군관구와 예하군을 직접 지휘한 흔적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군 소속 정치기관끼리의 정보보고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현지 상황 보고와 동향 파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극동군 총사령부 정치기관도 하부의 보고를 토대로 독자적인 정세판단과 정책건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1946년 초 소련군 총정치국장이 되는 극동군 총사령부 군사회의 위원 겸 정치국장 쉬긴의 역할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직책을 옮긴 후에도 자신의 이전 역할을 고스란히 떠안았기 때문이다.

연해주 군관구 사령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스크바의 직접 지도를 받았다. 사령관은 바로 전 제1극동전선군을 이끌고 대일 전쟁을 수행한 K. A. 메레츠코프 원수이고 군사회의 위원은 T. F. 슈피코프 상장이었다.<sup>54</sup> 전자가 전형적인 군인이었다면, 후자는 이력이 보여주듯 군인이라기보다는 직업적인 정치가이자 당 관료라고 할 수 있다. 메레츠코프는 군사령관으로서 군무를 통솔하였지만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민정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개입하였다. 군사회의 의장으로서 일체의 업무를 파악해야 하는 위치이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25군 군사회의나 정치기관이 보낸 보고서나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명령에는 그와 슈피코프의 명이가 따르는 것이 통례였다. 1947년 6월 메레츠코프가

54) 슈피코프는 1929년 입당한 후 1936~1938년 공장 당위원회 부서기, 서기, 지역소비에트 대표, 빅보르그 지역당 위원회 제1서기를 거쳐 1939년에 레닌그라드주당 제2서기에 오르는 등 당 사업에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소련·핀란드 전쟁시기(1939~1940)에 군에 들어가 7군 군사회의의 위원을 맡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닌그라드(1942~1943)·볼호프(1943~1944)·까렐(1944) 전선군 군사회의의 위원, 연해주집단군(1945. 4.~1945. 8.)·제1극동전선군(1945. 8.~1945. 10.) 군사회의의 위원,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위원(1945~1947)·정치담당 부사령관(1947~1948) 등 정치부문 사업을 담당했다. 북한정권 수립 이후에는 주 북한 특명전권대사(1948~1951)로 부임했고 이후 당 중앙위원(1956~1961)이 되었다.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8, с. 544 ; За мир на земли Кореи (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105~106.

이임하자 S. S. 비류조프 상장이 새 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여러 상황을 살펴 보면 비류조프는 정치사업에 대해 전임자보다 관심을 더 기울였던 것 같다.<sup>55)</sup>

그러나 여기서는 슈띠코프의 위치와 역할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슈띠코프는 모스크바 당국의 대북한 정책결정을 25군사령부에 단순히 하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많은 점에서 대한 정책입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의 상부 라인인 외무성과 무력성,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로 이어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스탈린, 몰로토프, 주다노프 등 모스크바 최고 정책결정자들과 직접적인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주다노프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모스크바 지도부와의 연계는 비공식성을 띠기도 했다.<sup>56)</sup> 그의 명의로 된 보고 및 정책 건의(입안)는 보통 외무성과 무력성의 장·차관,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되었다. 당정치국 ‘정령’ 초안들이 그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다.<sup>57)</sup> 또한 슈띠코프는 한반도 운명의 토론장이 된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단 단장으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미소간의 교섭에 있어서도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sup>58)</sup> 때로는 김일성을 포함한 북한 좌익 지도자들은 그와 회동하여 주요 정책문제를 협의하고 사안에 따라 그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슈띠코프는 일련의 과업 투쟁과 ‘3당 합당(남로당 결성)’에도 개입하는 등 남한 좌익 세력에 대해서도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sup>59)</sup> 군사회의가 해소되는 1947년 1월

55) 그는 조선의 정치사업에 대한 슈띠코프의 ‘전황’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조선에 대한 모든 지시는 나를 거쳐야 한다고 슈띠코프 동지에게 전할” 것을 하부에 통고하였다. ‘레베제프 일기’(1948. 4. 9.).

56) Ланьков А. 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вчера и сегодня (북한 : 어제와 오늘). М., 1995, с. 72. 주다노프는 레닌그라드 주당 제1서기로서 제2서기인 슈띠코프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둘은 장인과 사위 관계로 알려져 있다.

57) 이를테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난 후 작성된 당 정치국 ‘정령’ 초안 “조선에서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에 관하여”를 들 수 있다.

58) 1946~1947년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대표단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단장 : N. F. 슈띠코프, 대표 : S. K. 짜라쁘긴(제1차 공위 : 외무성 미국부장), G. I. 뜻긴(제2차 공위 : 외무성 제1국동부장, 국제법 전문가), N. G. 레베제프(25군 군사회의 위원, 주목한 소련 민정국장), G. M. 발라사노프(25군사령관 정치교문), T. I. 포르폴렌코(민정기관 산업부장).

59) ‘슈띠코프 일기’(1946. 9.~1948. 9.) 참조.



<표 5> 연해주 군관구의 대한반도(북한) 정책담당 지휘부 구성

부서	직책	성명	계급	후임
사령부 군사회의	사령관	K. A. 메레츠코프	원수	S. S.비류조프(상장, 1947. 6.)
	위원	T. F. 슈띠코프 그루셰비	상장 소장	
정치국	국장	K. 깔라쉬니코프	소장(1946년 이후 중장)	K. 소로킨(중장), F. 두봄스끼(소장)
	부국장	바빌로프	대좌	
정치국7부	7부장	G. K. 메끌레르	중좌	K. 이바노프(대좌), I. 마르모르쉬쎄인(소좌, 이후 중좌)

이후에도 정치 부문 부사령관으로 취임하여 이전의 임무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요컨대 그는 연해주 군관구와 25군사령부의 정치기관을 포함한 대북한 민정 업무를 총지휘했을 뿐 아니라 모스크바 당국의 대한반도 정책판단 및 결정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해방 3년간 북한의 주요 변화 과정에 그가 개입하지 않은 일이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의 업무는 상당 부분 I. V. 그랍초프 대좌의 보좌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년간 군 정치사업과 언론 활동에 종사한 그는 주로 슈띠코프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 점에서 슈띠코프는 그에게 적지 않은 신뢰를 보였다.<sup>6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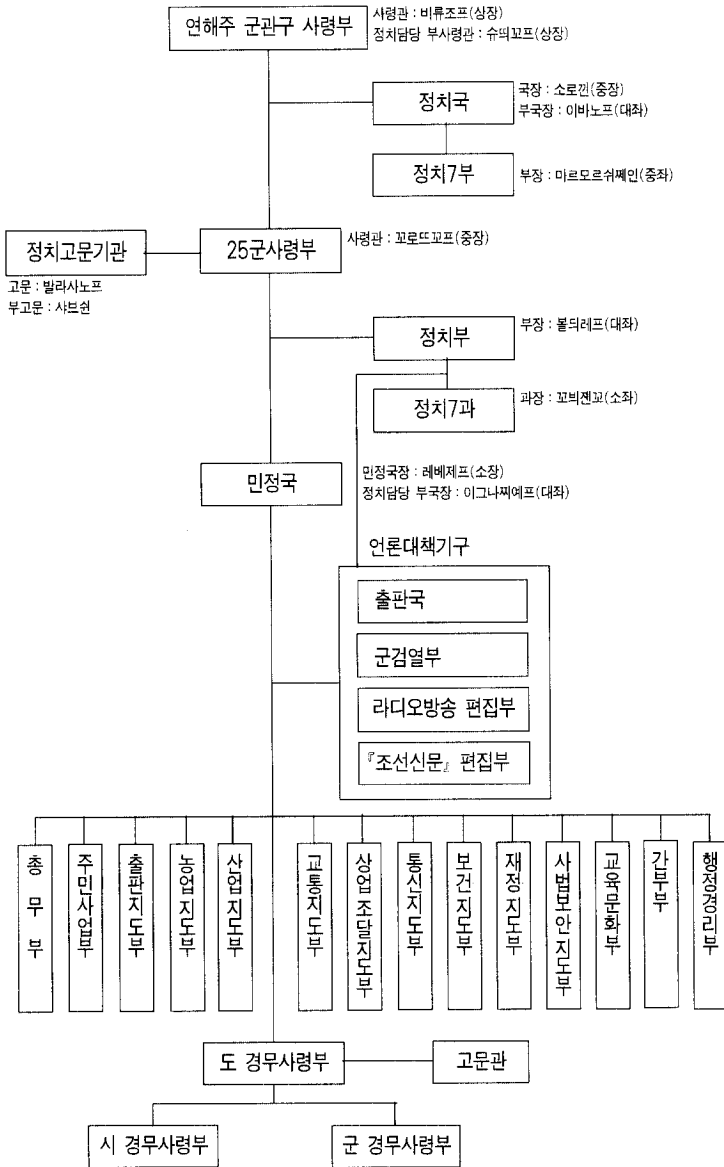
다른 군사회의의 위원 그루셰비 소장은 한국문제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슈띠코프가 부재중일 경우 대행 역을 맡았던 흔적이 눈에 띈다.<sup>61)</sup>

일반적으로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는 25군사령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훈령’, ‘결정’, ‘명령’ 등의 양식을 통해 지도하였다. 이것들은 모스크바 지도부의

60) Петухов В. И. Там же, с. 85.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1년 그랍초프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방조하에 자신의 한국문제 연구경험을 토대로 Агрессия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мпериализма в Корее 1945~1951 гг.(조선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침략 1945~1951)을 발간하기도 했다.

61) 예를 들면 ЦАМО, ф. 379, оп. 532092, д. 2, лл. 109~115 참조.

<그림 2> 소련군의 대북한 정책집행도(1947년)



결정 사항이나 자체의 방침을 하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은 군사회의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소련군 총정치국의 지도를 받으면서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하였다. 이 기관은 역으로 25군 정치기관을 지도하고 이로부터 각종 보고를 접수하여 이를 토대로 상부 기관(소련군 총정치국과 극동군 정치기관)과 연결을 가졌다. 그 산하 정치7부는 이미 대일 전쟁 직전 자체의 임무로서 한국어로 된 각종 선전·선동문의 제작을 전담하기도 했다. 정치7부의 계통 라인은 일반적으로 25군 정치7과의 보고를 종합·정리하여 총정치국 7국에 재차 보고하는 것이 통례였다.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장은 처음 K. 깔리쉬니코프 중장이었으며, 1946년 중반 이후에는 일찍이 제2극동전선군 참모부 정찰부장으로 88독립보병여단의 결성에 개입했던 K. 소로긴 중장이, 1948년경에는 F. 두보스끼 소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정치국 7부장 G. K. 메끌레르는 해방 직후 북한에 들어와 현지 정세 파악과 김일성 동행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1946년 후반경 이 직위는 I. 마르모르쉬제인 중좌에게 맡겨졌다.

## 2) 25군사령부 및 민정국

제1극동전선군(연해주 군관구 전신) 소속 25군은 대일 전쟁이 시작되면서 태평양 함대와 공조하여 북한 진출 임무를 부여받았고 전투가 종결된 후에도 1948년 12월까지 주둔군으로 남게 되었다.<sup>62)</sup> 북한 진주가 실시되자 25군 지휘부는 주둔 및 대민 업무의 준비 과정으로 우선 지역 정세와 정치세력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이 과업의 수행에는 25군 산하 정치기관인 정치부장 A. G. 그로포프(대좌) 이외에도 소련군 총정치국 7국 부국장 B. G. 사쁘쥬니코프(소장),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 부국장 바벨로프(대좌),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 7부장 G. K. 메끌레르(중좌) 등 상급 군 정치기관의 간부들이 북한 현지에 투입되어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다.<sup>63)</sup> 해방 초 북한지역의 통치 준비가 미흡한

62) 25군 참모부 및 모든 야전군 지휘부는 사실상 1948년 5월에 소련으로 철수하였다.

63) ЦАМО, ф. 32, оп. 11306, л. 682, л. 269.

상황에서 이들의 정세 및 각종 상황보고는 이어지는 소련의 대북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의 북한 내 정책집행과 제반 사업의 현지 지도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지휘하에 평양에 소재한 25군 군사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5군 군사회의는 의장으로 사령관인 I. M. 치스짜코프(근위상장)가, 위원으로는 N. G. 레베제프(소장), A. A. 로마넨코(소장), I. S. 프루소프(소장 : 제2위원)가 포진해 있었다. 치스짜코프는 25군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단순히 군무만을 관장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민정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임시로 군령권을 25군 부사령관 P. F. 라구젠(소장)에게 넘기고 행정 사업을 지휘하였다.<sup>64)</sup> 또한 25군의 대민 포고령도 자신의 명의로 공포하였고, 사안에 따라 대민 보고를 접수하는 등 민정 업무에도 상당 정도 관여하였다. 1947년 4월 그의 임무는 새 사령관으로 부임한 G. P. 꼬로트코프(중장)에게 이양되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로마넨코와 레베제프는 25군의 민정 업무를 책임지고 집행하였고, 프루소프는 일부 민정 업무에도 참여하나 해방 직후부터 군 후방부장과 더불어 일제가 남긴 물품, 재산 등을 관리하고 군을 부양하는 책임을 졌다. 1947년 1월 25군 군사회의도 역시 해소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맡은 역할과 임무는 그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후부터 민정국과 정치기관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표 6>의 25군사령부 대민 지휘부 구성에서 참모장이 포함된 것은 그 직책의 성격상 주로 군무를 담당하였지만 민정 부문의 사업에도 직·간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5군이 북한 내에서 실시한 각종 조치나 방책은 연해주 군관구와 마찬가지로 25군 군사회의(또는 사령관)에 의해 ‘훈령’, ‘결정’, ‘명령(포고령)’ 등을 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들은 연해주 군관구의 결정 사항을 재차 발하거나, 가능한 범위에서는 자체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민용으로 언론에도 공포되는 경우가 많았다.<sup>65)</sup>

25군사령부의 정치기관으로서 정치부와 특히 그 산하 정치7과가 활발한 대

64) Чистяков И. 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조국에 복무함). М., 1985, с. 282.

65) ШАМО, ф. 379, оп. 532092С, д. 1, лл. 1~59 참조.

<표 6> 25군사령부 지휘부 구성(대민 관련)

부서	직책	성명	계급	후임
사령부 군사회의	사령관	I. M. 치스짜코프	근위상장	G. P. 꼬로뜨코프(중장, 1947. 4.)
	의장	I. M. 치스짜코프		
	위원	N. G. 레베제프	소장	
		A. A. 로마넨코	소장	
		I. S. 프루소프	소장	
참모부	참모장	A. A. 뵘필스끼	중장	G. I. 사닌(소장, 1946)
민정 기관 (민정국)	행정·정치 부장(부국장)	A. M. 이그나찌예프	대좌	
	정치부	부장	A. G. 그로모프	대좌
정치7과	7과장	빌가룩	소좌	꼬비젠코(소좌)

민 사업을 벌였다. 해방초 정치7과와 예하 사단 정치과는 연해주 군관구 정치 7부의 지휘하에 포로 심문, 대중 시위(집회) 조직, 대민 선전활동에 종사하였다.<sup>66)</sup> 이후 정치부와 정치7과의 활동은 대체로 아래의 민정기관(민정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진행되었다. 상급 정치기관과 총정치국에게로 전달되는 각종 정보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는 바로 25군 정치부였다. 25군 정치부의 과업 중에는 평양학원이나 중앙보안간부학교와 같은 간부 양성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소련 문헌의 한국어 번역 사업도 들어 있었다. 정치부장 A. G. 그로모프<sup>67)</sup>는 25군 군사회의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정치사업을 수행하였다. 정치부 산하 정치7과는 빌가룩(소좌)이 이끌다가 얼마 후 꼬비젠코(소좌)로 교체되었다. 정치부의 선전·선동 사업에는 소련계 고려인 장교들도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sup>68)</sup> 한편 아노힌 소장이 이끄는 25군 방첩부(일명 ‘스메르쉬 CME

66) ЦАМО, ф. 234, оп. 3225, д. 28, лл. 42~59.

67) 그는 1927년 적군에 입대하여 청년 지휘관 학교의 전사와 생도를 거쳐 중대 정치지도원, 연대 위원(꼬미사르), 사단·군단 정치부장 및 위원을 역임하였다. 1943년 8월에는 25군 정치부장으로 임명되었고, 해방 직후부터 1947년 7월까지 북한에서 활동하였다.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 91.

PMI)는 정치기관 및 경무사령부와 공조하여 반소·반공운동 및 테러 활동을 적발해 내는 임무를 맡았다.<sup>69)</sup>

소련군사령부는 대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민정 기구를 설치하였다. 1945년 9월경 25군사령관 치스짜코프는 이 기구의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구상을 연해주 군관구 사령관 메레츠코프에게 보고하였고<sup>70)</sup> 10월 3일 25군사령부 산하에 소련 민정기관이 탄생하였다. 11월 말에는 약 50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기관을 지휘하는 민정 담당부사령관 직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sup>71)</sup> 소련측 문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며 조선인민 자신의 국가권력 수립에 방조하는 문제 등을 담당하는”<sup>72)</sup>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였다. 설립 당시 이 기관은 25군 민정기관이란 명칭을 지녔다. 그러나 여러 군 문서에 나타나듯이 주 북한 소련 민정국으로 확대·정비된 1947년 이전에도 민정기관은 민정국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았다. 민정기관에 대한 지도는 25군 군사회의가 담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민정 담당 부사령관에는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명령에 따라 25군 군사회의의 위원 A. A. 로마넨코<sup>73)</sup>가 임명되었다. 1945년 9월 중순 평양에 도

68) 해방 직후에 정치7과에만 소련계 고려인 장교 5명이 배치되었다. ЦАМО, ф. 234, оп. 3225, д. 28, л. 53.

69) 스메르쉬는 방첩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Контрразведки)의 별칭으로 ‘첩자에게 죽음을’이란 뜻이다. 1943년 4월 독일군의 첩보·과괴 활동에 대하여 방위인민위원회(무력성의 전신) 산하에 창설되었으며, 부위원(차관)이 국장을 겸임하였다.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 및 국가안전인민위원회(НКГВ)와 긴밀한 공조체계 속에서 활동했다. 1946년 5월 스메르쉬 기관들은 특수 부서들로 개편되어 국가안전성(МГБ)에 배속되었다.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2, с. 564.

70) Чистяков И.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조국에 복무함). М., 1985, с. 283.

71) 『북조선 소비에트 민정국 사업결과 보고(1945~1948)』 АВРР, ф. 0480, оп. 4, п. 14, д. 46, л. 7.

72) За мир на земли Кореи(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15~16.

73) 그는 대일 전쟁 전에는 연해주 집단군 군사회의 위원으로 있다가 전쟁 개시를 앞두고 제1극동전선군으로 개편되자 35군 군사회의의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 родом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인민과의 우호를 위하여. 회상과 논문). М.,

착한 그는 초기부터 민정 업무를 책임지다가 이 직위에는 그해 12월 3일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취임하였다.<sup>74)</sup> 그의 역할은 슈피코프의 지도하에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의 각 부문, 즉 민정에 대한 실무적인 지휘에 있었다. 35군 정치부장 출신으로 민정기관 행정·정치부장이 된 A. M. 이그나찌예프의 임무와 역할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인민위원회 및 정당·사회단체 지도부와의 접촉과 관계 유지에 대해 책임졌고, 특히 북한의 민족 간부 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 곧 소련측을 대표한 북한 지도자들과의 일차적 접촉과 협의는 그에게 맡겨진 주요 임무였다.<sup>75)</sup>

민정기관 내에 설치된 부서와 그 책임자들은 <표 7>과 같다. 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각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부문의 전문 요원들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연해주 군관구 산하 다른 부대에서 선발, 파견되었거나 25군 소속 장교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서들 가운데 행정·정치부는 북한에서의 정치적 ‘틀’을 지어 주는 데 방조하였고, 사법·검찰부는 법률과 사법체계에 대해, 보안·검열지도부는 무력과 경찰 부문 및 북조선 행정10국과 이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를 지도·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머지 부서는 산업, 경제, 기타 일상 부문에 대한 관련 업무체계를 지녔다. 민정기관 책임자 가운데 일라또프스키, 까디셰프, 라자레프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후에도 각각 재정성, 농림성, 체신성 고문으로 남게 된다.<sup>76)</sup>

한반도의 정치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북한의 행정·경제 기구의 규모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민정기관의 조직적 규모와 체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민정기관은 1947년 5월 주 북한 소련 민정국으로 확대·개편되었다. 몇몇 부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 책임자들도 일부 바뀌었

1965, с. 35~36. 로마네프는 1945년 9월 중순 25군으로 파견되어 1947년 봄까지 북한 내 민정 업무를 지도하였다.

74) ЦАМО, ф. 379, оп. 11034, л. 22, л. 140.

75)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 101 ; СССР и Корея, с. 138. 이그나찌예프는 1948년 12월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소련 대사관에 남아 참사관으로 일했으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겨울 미군 전투기의 기총 사격에 의해 사망하였다.

76)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36.

<표 7> 25군사령부 민정기관 부서와 책임자 명단

부서	책임자	계급	경력사항
민정담당 부사령관	A. A. 로마넨코	소장	35군 군사회의 위원
행정·정치부	A. M. 이그나찌예프	대좌	35군 정치부장
산업부	T. I. 꼬르콜렌코	대좌	
재정부	A. T. 일라토프스끼	중좌	재무 전문가
상업·조달부	미상		
농림부	I. I. 까디셰프	소좌	농업성 직원
통신부	G. R. 라자레프	대좌	군 통신부장
교통부	N. I. 돌기흐	중좌	군 교통부장
보건부	A. I. 로뜨블루뜨	소좌	의사, 25군 위생부장
사법·검찰부	B. V. 쉘찌닌	소좌	법학 전공자
보안·검열지도부	N. Ya. 자그루진	대좌	

\*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с. 35~36)와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с. 247)를 기초로 작성

다. 우선 민정국장으로서는 1947년 가을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 소련으로 돌아간 로마넨코를 대신하여 레베제프<sup>77)</sup> 소장이 임명되었다. 해방 후 3년간 슈뵈꼬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그는 제1, 2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소련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참가하여 실무 작업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8)</sup> 레베제프는 민정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북조선5도 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1945. 10.)와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수립과정(1946. 2.)에 적극 개입한 바 있다. 또한 김일성, 김두봉 등 북한 최고위층과 잦은 협의를 갖고 소련의

77) 그는 1920년부터 적군에 가담하여 폴란드 반혁명군과의 전투에 참가한 바 있고, 1934년 군사정치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상이한 시기에 부대 정치지도원 및 위원(코피사르), 사단 정치부장, 여러 군 교육기관의 지도원 등을 역임하였다. 서부 우크라이나 원정과 폴란드 반혁명군과의 전투에 참가하였고, 대독 전쟁이 발발하자 끼에프 특별군관구 참모부에 있다가 극동으로 배속되었다. Шабшина Ф. И. Южная Корея 1945~1946(남조선 1945~1946). записки очевидца(목격자의 기록). М., 1974, с. 219 ; Петухов В. И. Там же, с. 89.

78) 이에 관해서는 ‘레베제프 일기’(1947. 5. 14.~1947. 9. 13.) 참조.



<표 8> 주북한 소련 민정국 조직표

부서	책임자	계급	구성(계급)	인원
민정국장	N. G. 레베제프	소장	민정국장 부관 : A. S. 가피쉬니코프(상위)	
정치담당부국장	A. M. 이그나찌예프	대좌	부국장 대행 : I. V. 뿌센(중위)	
총무부	A. M. 이그나찌예프	대좌	베스발로프, 고발료프	
주민사업부	A. A. 스푸츠끼	중좌	선전·선동부문 선임교관 : V. A. 게셀레프(중좌), 정보부문 선임교관 : V. V. 식르바체프(중좌), 정당·사회단체지도부문 선임교관 겸 주민사업부 부부장 : V. P. 베스발리(소좌), 교관 : P. K. 세 보프(중좌)와 4인	9
출판지도부	N. L. 네이마르크	소좌	선임교관(검열관) : S. 말고진(대위), 교관(검열관) : 이호구, A. V. 강	4
농업지도부	I. I. 까디쉐프	중좌	선임교관 : I. Ya. 마까로프(대위), 교관 : I. D. 사라블예프(상위) 외 2인	5
산업지도부	S. P. 로지오노	중좌	선임교관 : B. A. 아드노레뜨코프(소좌), 교관 : A. I. 쉬술란니코프(대위) 외 2인	5
교통지도부	I. E. 들기흐	공병 중좌	선임교관 I. D. 쉼엔제프(중좌), 교관 : A. S. 까줄린(상위)	3
상업조달 지도부	I. S. 네우메이코프	대위	교관 : S. V. 사브렌코(대위), P. S. 오도끼엔코 (상위)	3
통신지도부	G. S. 라자레프	대좌	교관 : P. A. 끌류고빈(대위), A. I. 쉐드리코프 (공병대위)	3
보건지도부	V. S. 자베르윈스끼	중좌	교관 : L. V. 제니소프(소좌) 외 1인	3
재정지도부	A. T. 일라톱스끼	대좌	교관 : V. G. 또미셴스끼(대위), P. R. 제니센코 (상위)	3
사법·보안 지도부	N. Ya. 자그루진	대좌	선임교관 : 미상, 교관 : V. V. 띄슈코(소좌)	3
교육문화부	P. S. 막심축	소좌	중고등 부문 선임교관 : I. P. 고롤로프(대위) 초등교육부문 교관 : V. V. 꼬냐제프(대위)	3
간부부	K. O. 아바세예프	중좌	교관 : V. G. 필립쎌프(대위)	2
행정경리부	V. M. 마드베예프	중좌	부부장 : V. F. 뽀프로프(소좌), 암호부 장교 : A. 22 M. 레벤(대위), 비밀 사무담당관 : I. N. 에레민 (중위), 사무·경리관 : A. S. 압고센찌예프(상위), 통역관 : S. S. 쟈가이(상위), D. I. 박, V. M. 신	22

\*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 258~260; ЦАМО, ф. 142, оп. 432240, д. 9, лл. 428~431; АВВР, ф. 0480, оп. 4, п. 14, д. 46, л. 9~10을 종합·분석하여 작성.

입장을 전달하는 등 1948년 12월 소련군이 철수할 때까지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 실무적 지휘 능력을 발휘하였다. 정치 담당 부국장에는 행정·정치부를 맡았던 이그나찌에프가 직함을 바꾸어 재배치되었다. 민정국의 조직 규모는 총 13개 부서에 요원수 74~80명 가량으로 확대·보강되었다. 다음에 언급할 각도 경무사령부 고문관을 제외한 민정국의 부서와 그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다.<sup>79)</sup>

이전과 대비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치 담당 부국장직과 주민사업부를 신설하여 인민위원회와 정당·사회 단체에 대한 정치적 업무를 조직적으로 강화시킨 점이다. 북한 정치활동가들과의 실무적 접촉은 주민사업부의 주요 소관이었다. 정치 담당 부국장 이그나찌에프는 총무부장을 겸직하면서 민정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간부부 설치에 북한의 민족 간부 양성에 큰 비중을 둔 것을 의미하며, 행정정리부는 민정국의 기구적 완결성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sup>80)</sup> 이전 민정기관 부서 책임자 가운데 웨찌닌이 제외된 것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코르골렌코의 경우 북조선 산업 담당 고문관으로 전임되어 북한의 산업 복구와 생산 및 민정국 경제 관련 부서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였다.

한편 출판지도부 신설은 북한 언론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와 지도를 기하려는 의도였다. 이 업무는 연해주 군관구 정치국 및 25군 정치부 소속 언론 대책 기관들과 공조하여 이루어졌다. 관련 기관들의 명칭과 구성은 <표 9>와 같다.

이들 기관 가운데 군검열부는 북한에서 출간되는 각종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 곳이었다. 이 기관들의 활동은 사실상 북한 소련 민정국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졌다.

민정국의 기능과 성격에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이 기관이 남한에

79) АВГР, ф. 0480, оп. 4, п. 14, л. 46, л. 9~10. 이 구성은 1947년 5월 26일 소련 내각회의 산하 국가정원위원회에 의해 확정되었다.

80) 교육문화부가 이전 민정기관 내에서도 존속했는지의 여부는 분명치 않다. 자료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다. 교육문화부장 막심축은 25군 정치부 간부 출신이다.

## <표 9> 군 정치기관 내 언론 대책기구

부서 명칭	책임자	계급	부서 인원
출판국	까들린	중좌	15
군검열부	콘드리쑉	중좌	16
라디오방송 편집부	그루지닌	중좌	7
『조선신문』 편집부	부딕긴	대좌	44

출전 : АБНП, ф. 0480, оп. 4, п. 14, д. 46, л. 11.

설치된 미군정청과는 달리 일반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진 대주민 통치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민정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각 정당과 사회 단체에 필요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행정 기구인 인민위원회에 각종 자문과 지도를 실행하는 기구였다. 민정국의 사업은 인민위원회 및 정당·사회단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대주민 관계는 이들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정국과 정치부 장교들이 북한 권력기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본보기로는 북한 지도자들의 주요 문건 작성이나 행사 진행에 조력을 명분으로 개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sup>81)</sup>

민정국이 상부 기관(연해주 군관구)에 제출하는 보고에는 경제 상황(산업·농업·교통·상업·재정·물가 등), 정치 상황(인민위원회 및 정당·사회단체 사업과 상호관계, 정치지도자와 주민의 동향, 정치적 제반 조치 등), 문화·예술 부문의 상태, 민정국과 경무사령부의 활동과 업무, 남한의 정세 등이 망라되었다. 이들 보고는 정부 수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주요 원천이기도 했다. 민정국의 직접적인 보고 라인인 연해주 군관구뿐 아니라 본국 외무성에도 연결되었다. 상급 정치기관은 민정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모스크바 지도부를 포함한 상위 기구에 보고할 문건들을 새로이 작성하였

81) ЦАМО, ф. 142, оп. 432241С, д. 3, лл. 123~128.

다. 이렇듯 민정국은 북한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방책들을 입안하고 형성시킬 기본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 조직과 기능은 소련군이 북한에서 완전 철수할 때까지 이어졌다.

### 3) 경무사령부

소련군은 북한지역을 접수하자마자 질서 유지와 주민들의 정상 생활 유지, 그리고 소련군에 식량·연료·기타 물자의 원활한 보급을 꾀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경무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각지에서의 전권은 지방 권력이 수립될 때까지 소련군사령부가 임명한 군 경무관에 있음이 선포되었다.<sup>82)</sup> 경무사령부 설치의 각 지역 통제와 연해주 군관구 및 25군사령부와 산하 군사회의의 명령 집행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경무사령부는 북한 도·시·군 단위로 결성되었는데, 1945년 9월 28일경에는 모두 54곳에 설치되었다.<sup>83)</sup> 해방 초 경무사령부에 주어진 주요 임무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질서 유지, 주민의 정상 생활 회복, 일본군 무기 및 전리품 등의 관리와 보존, 둘째, 반소·반적군(赤軍) 선전활동을 적발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 가운데서 협력자를 물색하는 것,<sup>84)</sup> 셋째, 지역 행정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기관과 각종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소련의 정책을 선전·설명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것 등이다. 경무관에게는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령’과 ‘처분’ 발동권이 주어졌다.<sup>85)</sup>

이후 경무사령부는 북한 전역으로 확장되어 6개 도, 85개 군, 7개 시(평양·진남포·청진·함흥·신의주·해주·원산)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1948

---

82) Оружием слова, с. 165.

83)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소련군의 해방적 사명). M., 1974, с. 442.

84) 협력자 선발은, ① 이전 권력에 의해 억압당한 자(정치범·보호관찰자 등), ② 이전 체제에 협력하지 않은 민주 인사, ③ 적군(赤軍)의 대일 전투에 협력한 유격대원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ЦАМО, ф. 32, оп. 11318, д. 196, лл. 99~100.

85) Там же, с. 94.

년 중반에는 모두 92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 단위가 도 경무사령부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sup>86)</sup>

각 경무사령부는 도·시·군 단위의 규모에 따라 조직과 구성원이 배치되는 양상을 띠었다. 1948년 3월 16일 현재 각 경무사령부에 배치된 총인원은 소속 경비대를 포함하여 1,262명에 이르렀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장교 337명, 하사관 175명, 사병 750명이다.<sup>87)</sup> 도시군 경무사령부의 조직편제는 <표10>과 같다.<sup>88)</sup>

6개도 중심 도시에서 조직된 도 경무사령부는 해당 도의 시·군 경무사령부를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가졌다. 군 이하 면·리 단위의 경무사령부는 조직되지 않고 최하부 정책집행 단위인 군 경무사령부가 이들 지역에 요원들을 파견하여 정세 파악과 필요한 정책 사항을 조사하였다.

해방 직후 경무사령부는 25군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다가 곧이어 민정기관이 설치되자 그 직속으로 편입되어 활동하였다. 각 경무사령부의 책임자들은 통상 대민 정치사업과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지도 경험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것은 소련군이 한반도 진주시 일련의 전투를 거치거나 전투

<표 10> 경무사령부 조직편제

단위	조직구성	인원
도 경무사령부	경무관, 정치담당부경무관, 전투부대담당 부경무관, 경무관 고문 2인, 교관 2인, 급식소장, 사무장, 통역원 등	총 22명 외 경비소대
군 경무사령부	경무관, 정치담당부경무관, 전투담당 고문, 통역원, 사무원 등	총 6명 외 경비소대 (이후 본대로 축소됨)
시 경무사령부	(업무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구성됨)	

86)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л. 137~138.

87) ЦАМО, ф. 40, оп. 178427, д. 90, лл. 121~132.

88) АВГР, ф. 0480, оп. 4, п. 14, д. 46, лл. 4~5.

대형을 유지하면서 들어온 부대 지휘관들이 경무사령부를 책임진 데에 원인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5군사령부는 각도 경무사령부에 정치사업과 자치기관(인민위원회) 지도를 목적으로 사단 정치부장과 군 정치기관 요원들도 경무사령부 고문관을 임명하였다. 도 고문관은 사실상 도별 경무사령부 사업을 이끌었고, 지방 인민위원회와 정당·사회단체를 자문·지도하는 등 정치사업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후 소련군사령부 도 대표 또는 소련민정국 고문관이란 명칭으로 불렸다. <표 11>은 해방 이래 3년간 존속했던 각도별 경무사령부의 지휘부를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만 이들 구성원들의 정확한 재직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도 경무사령부는 시·군 경무사령부에서 올라오는 각종 보고를 취합하거나 도 차원의 상황과 사업에 대해 민정국과 25군 고문 기구에 보고하였다. <표

<표 11> 각도 경무사령부 지휘부 구성

도별\직위	고문관	경무관	정치담당부경무관
평안남도	빅고르끼(중좌), 후임 : V. F. 꼬롤료프(대좌), N. I. 아가르코프(중좌)	무르진(대좌), 후임 : 암니고프(대좌)	둘끼(중좌)
평안북도	그리포프(대좌) 후임 : I. F. 모스칼렌코(대좌)	기르꼬(중좌), 후임 : 표도로프(소좌)	I. F. 모스칼렌코 (중좌)
함경남도	A. 세묘노프(중좌), 후임 : L. F. 체민(대좌)	스꾸바(중좌)	
함경북도	L. P. 구레비치(중좌)	꾸드라브체프(중좌)	
황해도	I. F. 꼬뉴호프 (중좌, 이후 대좌)	노긴(중좌)	A. F. 찰리코프(대위), 후임 : 빼가르스끼(소좌)
강원도	A. 솔로비예프(중좌), 후임 : 샤로프(중좌), 스푸초끼 (중좌), V. I. 꾸추모프(대좌)	울리아노프(중좌), 후임 : 아가르코프(소좌)	부가예프(소좌), 후임 : 뽀루힌(중좌), 로진스끼(소좌)

출전 : ЦАМО, ф. 142, оп. 432240, д. 9, лл. 428~431 ;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 99~100 ; 기타 여러 군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후임자 가운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11>에 나타난 고문관, 경무관, 정치 담당 부경무관이 보고의 주체들이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올린 보고 내용을 대별해 보면, '지역 주민의 민심 동향', '인민위원회와 정당·사회단체의 현황 및 활동', '농업 및 산업 상황', '경무사령부의 사업보고'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외는 별도로 토지개혁, 북로당 지구당 결성, 인민위원회 선거 등 북한 전역에서 벌어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상세한 보고가 진행되었다.<sup>89)</sup> 이러한 업무 진행은 시·군 경무사령부와의 계통적 질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이렇듯 경무사령부는 군 하부단위로서 25군 군사회의와 민정국의 지시를 집행하고 대민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각종 정보보고를 상부에 제공하는 업무를 실행에 옮겼다.

## 5. 맺음말

소련의 대한반도 관련 정보보고체계는 중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기관들의 단일선상에서가 아니라 여러 기관들 간의 복잡한 유기적 연관 속에서 구성되었다. 먼저 아래로부터의 계통을 살펴보면, 25군 군사회의·민정국→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 민정국·25군 고문기관·주 서울 소련 영사관→외무성 제2(1)극동부, 25군 정치부→연해주 군관구 정치국(극동군 총사령부 정치국)→소련군 총정치국 등 3라인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후자의 기관들은 걸러진 정보를 당 중앙위원회 담당 부서 및 외무성과 무력성의 담당 차관들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정책 건의를 아울러 수행하였다. 물론 이 같은 분류는 도식적으로 적용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슈뻬코프)은 당 중앙위원회 부서로, 25군 고문기관(발라스노프)은 외무성 차관들에게도 보고 및 정책 건의체계를 유지하였다.

여기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 책임을 진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몫

89) ЦАМО, ф. УСГАСК, оп. 102038, д. 1, 2, 3, 4; оп. 106546, д. 1, 3, 4, 10; оп. 342253, д. 2, 3, 9 등의 문서 참조

이 다른 부서에 비해 월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상위 기구들이 마련한 정책입안들도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의 구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정책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은 주 북한 민정국과 경무사령부, 25군 정치기관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모스크바 지도부의 정책결정 과정은 대체로 두 방향에서 성립되었음이 확인된다. 첫째,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내각회의(주로 경제문제)의 '정령'을 거쳐 확정 절차를 밟는 것이다. 이것은 하부기구의 주요 정책 건의(입안)가 당 정치국과 내각회의의 담당 인물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정치국원의 직위를 겸하는 정부 부처 수반급들의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결정되는 과정이다. 이 두 과정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1946년 북한 민주개혁 법령들은 모두 당 정치국 또는 내각회의의 '정령'을 통한 과정이 수반되었다. 하지만 당 정치국이 다른 문제의 범위가 중앙보안간부학교 설립과 같은 '평범한' 것들도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경계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다만 사안이 부처간의 '쟁점'이 되는가의 여부가 그 차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소련의 대한정책의 결정과 집행 구조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하부 정책 담당기구 간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는가 여부일 것이다. 당시 남한의 미군정과 본국 정부간의 '미묘한' 갈등이나 한국전쟁 시기 맥아더의 해임을 이끈 미국 정부와의 대립이 유사한 궁극증을 자아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한 정책을 두고 갈등 구조가 실재했다는 증거는 없다. 만일 그랬더라면 정책 담당자의 직위 이동과 같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에트 이데올로기라는 단일 이념의 지도하에 유지되어 온 소련 체제하에서 지도 성원들 간에 전략적 원칙이 공유된 측면도 이 같은 문제의 발생 요인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비류조프와 슈피코프의 예처럼 기구 내에서 개인적 갈등 양상이나 개별정책 과제에 대한 담당자들 간의 일부 의견 차이는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해방 3년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입안·결정·집행 구조를 각 계통 기구의 고찰과 담당 인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모스크바 지도부의 정책결정 경로를 사례별로 풍부하게 해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는 특히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각 부서별 기능이 충분히 밝혀지고 정치국 '정령' 문서 등 관련 자료들이 완전히 공개될 때 해결되리라고 본다. 아울러 소련의 정책 라인과 북한측 기구 사이의 정책 협의 과정에 대한 해명도 앞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러시아연방 문서보관소 자료)

—외무성 문서보관소(АВТР)

ф. 06, оп. 8, п. 39, д. 634 ; оп. 9, п. 59, д. 885

ф. 07, оп. 21, п. 22, д. 316

ф. 018, оп. 8, п. 6, д. 81

ф. 0102, оп. 1, п. 1, д. 2

ф. 0480, оп. 4, п. 14, д. 46,

—국방성 문서보관소(ЦАМО) :

ф. 19, оп. 266, д. 27 ; оп. 267, д. 8

ф. 32, оп. 11306, д. 682, л. 269 ; оп. 11473, д. 1 ; д. 45 ; оп. 795436С, д. 13,

ф. 40, оп. 178427, д. 90

ф. 142, оп. 432240, д. 9 ; оп. 432241С, д. 3

ф. 148, оп. 3763, д. 111

ф. 234, оп. 3225, д. 28

ф. 379, оп. 11034, д. 22 ; оп. 532092С, д. 1 ; оп. 532092, д. 2,

ф. УСГАСК(주북한소련민정국), оп. 102038, д. 1, 2, 3, 4 ; оп. 106546, д. 1, 3, 4,

10 ; оп. 342253, д. 2, 3, 9

—현대역사문서 보존 및 연구센터(РЦХИДНИ) :

ф. 17, оп. 128, д. 55 ; д. 61 ; д. 205 ; д. 1119 ; д. 1173

—국립문서보관소(ГАРФ) :

ф. 5446, оп. 48а, д. 172

- 김광운, “소련의 대북한정책과 공산당 중앙지도기관의 결성”, 『역사와 현실』 제 22호(1996).
- 김성보, “北韓의 土地改革과 農業協同化”(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정용욱, “1942~1947년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政府形態 構想”(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정로』, 1946년 1월 24일.
- Во имя дружбы с народом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인민과의 우호를 위하여, 회상과 논문). M., 1965.
-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외교사전). T. 1~3, M., 1985~1986.
- Дневник Лебедева(레베제프 일기) 1947. 5~1948. 12.
- Дневник Штыкова(슈띠코프 일기) 1946. 9~1948. 9.
- За мир на земле Кореи (в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 땅에 평화를 위하여). M., 1985.
- Истор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소련공산당사). M., 1982
- Ки Кван Со. Формировани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и роль СССР (1945~1947 гг.) (북한정치체제의 형성과 소련의 역할), Кан. дисс. M., 1997.
- Коржихина Т. П. Сове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его учреждения : ноябрь 1917 г. - декабрь 1991 г.(소련국가와 그 기관 : 1917년 11월~1991년 12월). M., 1995.
- Ланьков А. 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 вчера и сегодня(북한 : 어제와 오늘). M., 1995.
- Оружием слова(언론의 무기). Статьи и воспоминания советских востоковедов 1941~1945 гг (1941~1945년 소련 동방 전문가들의 논문 및 회상). M., 1985.
-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Совет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제2차 세계대전에 있어서 소련군의 해방적 사명). M., 1974.
-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조선의 해방). M., 1976.
- Петухов В.И. У источников борьбы за единство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위한 투쟁의 기원에서). M., 1987.
- Пак Б. Д. Корейцы в Советской России(1917-конец 30-х годов)(1917~1930년대 말 소비에트 러시아의 한인들). Москва-Иркутск, 1995.
-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소비에트 군 백과사전). T. 1~8, M., 1976~

1980.

Состав руководящихся орган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политбюро(президиума), оргбюро, секретариата ЦК (1919~1990 гг.)(당중앙위원회 지도 기관-정치국(간부회), 조직국, 서기국 구성. 1919~1990년). Известия ЦК КПСС, 1990, № 7.

СССР и Корея(소련과 조선). М., 1988.

Хлевнюк О. В. Политбюро. механизмы политической власти в 1930-е годы(정치국 : 30년대 정치권력 메커니즘). М., 1996.

Шабшина Ф. И. В колониальной Корее(1940~1945) 식민지 조선에서(1940~1945). Записки и размышления очевидца(목격자의 기록과 고찰). М., 1992.

— Южная Корея 1945~1946(남조선 1945~1946). записки очевидца(목격자의 기록). М., 1974.

Чистяков И. М. Служим отчизне(조국에 복무함). М., 1985.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Oxford, 1989).

(Abstract)

## The USSR'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Military Organs and Personnels

*Kee Kwang Seo* (Sangmyung University, History)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n the Soviet Union's policy organs and the people in charg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between the liberation of Korea on August 15, 1945 and December 1948.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is to look into the organization and system of the policy-making body and examine the function and special features of each organ and the role of each official involved, rather than to try and grasp the character and concrete details of the Soviet Union's Korea policy.

In formulating the Soviet Union's policy on Korea, the Moscow leadership made decisions based on it and the military implemented the policy decisions. The Moscow leadership consisted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and the Government. In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the Politburo, which was the most powerful organ in the Soviet Union, the Party Secretariat, the External Policy Department and the Directorate of the Propaganda and Agitation wer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n the Government and military side were the Foreign and the Armed Forces ministries. Under the Ministry of Armed Forces was the General staff and the General political Directorate. These organizations analyzed reports from the military forces in the North Korea and drafted decisions.

The regional Soviet military consisted of the Command headquarters of the Maritime Military District,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North Korean

area ; the headquarters of the 25th Army which was in charge of policy implementation in North Korea, under which came the Directorate of the Soviet Civil Administration and military komendaturas. Under the two headquarters were various political organs. These organs drafted policies and implemented them. Needless to say, intelligence reports filed by these two organs became the basis for the Soviet Unio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

In short, if I were to list the command hierarchy of the Soviet Union in North Korea from top to bottom, it would be : the Moscow leadership (the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the Foreign Ministry, the Armed Forces Ministry) → (the Headquarters of the Soviet Far Eastern Forces) → the Headquarters of the Maritime Military District → the 25th Army Headquarters (Directorate of the Soviet Civil Administration and military komendaturas)